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 공급대상 : 684세대 중 공공분양주택 210호 [전용면적 74㎡ 74세대, 84㎡ 136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5호, 2020.03.01.)에 의거 **건축공정률 60%를 초과한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28(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850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건보주택(www.sweetcityb1-gb.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관련 안내 사항

- 하남감일스윗시티 B1블록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사이버 건보주택만 공개하며, 주택전시관은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 연승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며,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18.07.28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18.07.28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소득·자산보유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말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등'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8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3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 (단,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에는 1순위가 되지 못함)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0.07.28.)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분만 지역우선공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 또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로서 입주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입구에 관한 사실증명」을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VII.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고)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하남갑일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음(재당첨제한기간에 해당)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순위)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 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함)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예비입주자	전자	현장
		무주택 3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600만원이상	전체						
'20.7.28 (화)	'20.8.11(화) (10:00~17:00)	'20.8.12(수) (10:00~17:00)	'20.8.13(목) (10:00~17:00)	'20.8.14(금) (10:00~17:00)	'20.9.1(화) (14:00)	'20.9.3(목)~9.4(금) (10:00~17:00) ※ 동별 해당일 방문	'20.9.7(월)~9.11(금) (10:00~17:00)	'20.11.3(화)~11.4(수) (10:00~16:00)	'20.11.5(목)~11.6(금) (10:00~16: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하남사업본부 주택홍보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하남사업본부 주택홍보관

※ 1순위 접수 중 '20.8.12(수)에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20.8.12(수) 청약수가 모집수의 600%를 미달할 경우 1순위 전체와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600%초과 시 1순위 전체와 2순위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서류접수 및 현장 계약장소 : LH하남사업본부 1층 주택홍보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번지)]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서류제출 내방 일정이 상이함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해당일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10동	일반공급 예비자	특별공급 예비자
'20.9.3(목) (10:00~17:00)	'20.9.4(금) (10:00~17:00)	'20.9.7(월) (10:00~17:00)	'20.9.8(화)~9.11(금) (10:00~17:00)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0.11.03(화)~2020.11.04(수)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번지)]에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약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 시(2020년 09월 예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청약 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봄에 주의)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1. 공급규모

- 하남감일지구 B1블록 : 아파트 12~25층 10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684세대(가정어린이집 2세대 포함) 중 공공분양주택 210세대(일반공급 42세대, 특별공급 168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B1	합 계								210	22	63	42	10	10	21	42	25	9	'21년 5월	
	074.9300H	74A	확장	74.93	28.2964	4.2981	30.5112	138.0357	68.8656	74	8	22	15	4	4	7	14	19		3
	084.9100D	84B	확장	84.91	32.0653	4.8705	34.5750	156.4208	78.0379	136	14	41	27	6	6	14	28	20		2
		84B-1	확장	84.91	32.0653	4.8705	34.5750	156.4208	78.0379									25		4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 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주방·침실 등의 발코니 확장 여부는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84B-1타입은 초고층형 타입으로 84B타입과 외벽 및 코어두께에 차이가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2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자금)
					계약시	입주시	
074.9300H	74A	1층	기본형	502,100	100,420	326,680	75,000
		2층	기본형	507,440	101,488	330,952	75,000
		3층	기본형	518,120	103,624	339,496	75,000
		4층	기본형	528,800	105,760	348,040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534,150	106,830	352,320	75,000
084.9100D	84B	1층	기본형	568,970	113,794	380,176	75,000
		2층	기본형	575,020	115,004	385,016	75,000
		3층	기본형	587,130	117,426	394,704	75,000
		4층	기본형	599,230	119,846	404,384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605,290	121,058	409,232	75,000
	84B-1	1층	기본형	568,970	113,794	380,176	75,000
		2층	기본형	575,020	115,004	385,016	75,000
		3층	기본형	587,130	117,426	394,704	75,000
		4층	기본형	599,230	119,846	404,384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605,290	121,058	409,232	7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등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우리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 확장 비용(전세대 확장 시공)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천원단위로 산출했으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타입	구분	금 액							
			계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드레스룸	거실	주방/식당
074.9300H	74A	기본공사비(A)	73,987	8,415	6,082	6,009	-	8,356	14,095	31,030
		확장공사비(B)	81,599	9,751	6,268	6,196	-	9,244	15,157	34,983
		계약자부담액(B-A)	7,612	1,336	186	187	-	888	1,062	3,953
084.9100D	84B	기본공사비(A)	77,840	9,430	8,517	5,325	6,371	-	16,127	32,070
		확장공사비(B)	85,323	10,764	8,694	5,538	6,830	-	17,289	36,208
		계약자부담액(B-A)	7,483	1,334	177	213	459	-	1,162	4,138
	84B-1	기본공사비(A)	77,840	9,430	8,517	5,325	6,371	-	16,127	32,070
		확장공사비(B)	85,330	10,764	8,697	5,539	6,831	-	17,291	36,208
		계약자부담액(B-A)	7,490	1,334	180	214	460	-	1,164	4,138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계약금	잔금
금액	1,000천원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납부시기	계약시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자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자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자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하남감일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7.28)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남시)	30%	·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8.07.28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 거주 ('18.07.2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8.07.28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18.07.28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2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배정합니다.
- ※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하남시 2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7.28)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18.07.28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 또는 경기도 거주 ('18.07.2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2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2년 미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하남시 또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0.09.0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만 60세 이상인 경우 포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민원회신문(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임을 확인)을 받아야 인정되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흥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참조)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흥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흥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지속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 종류 주 택 건 물 시설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임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 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0년식 자동차를 2019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55,729원) 추가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참고)’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참고)’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참고)’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선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선정 대상에서 제외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의 소득을 말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1년 미만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 포함

• 기존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모혼처 모혼대상자 보상급여 및 모혼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우선 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선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모혼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 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하남시(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경기도부부호자치청(국가유공자), 서울경기도인천(장애인), 북한이탈주민청탁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장기복무 제대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경기도(의사상자)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0.08.11)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1.07.29 ~ 2020.07.28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임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점기간 개시일 이후 임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페이지 참고)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20 15 1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해당 사·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5 10 5	공급신청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계산 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세대구성(3)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유주택자인 경우 만60세가 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점 불가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사·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사·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계속해서 해당 사·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가 15년 전부터 해당 사·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3년 전부터 해당 사·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단,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부양에서 제외, 신청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에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
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페이지 참고)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
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페이지 참고)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 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태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443,986원	4,981,074	5,550,683	6,075,266	6,599,850	7,124,43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선정'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계산 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참조)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단,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하남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7.28)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제한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9.01)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제한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거주 의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 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와 ③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거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입주자 자격만 인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1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2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II.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0.08.11(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일반공급 • 1순위(무주택 3년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	2020.08.12(수) (10:00 ~ 17:00)		
	2020.08.13(목) (10:00 ~ 17:00)		
	2020.08.14(금) (10:00 ~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90-7803, 9361)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마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0.08.11(화)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로부터 기산하여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하남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명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가입한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9.3~9.11)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당첨자)	
	당첨자	예비입주자	전자	현장
2020.09.01(화) 14: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0.9.3(목)~9.4(금) (10:00~17:00) ※ 동별 서류접수일 - 9월 3일 : 201, 202, 203, 204동 - 9월 4일 : 205, 206, 210동	2020.9.7(월)~9.11(금) (10:00~17:00) ※ 서류접수일 - 9.7(월)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9.8(화)~9.11(금)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2020.11.03(화) ~ 11.04(수) 10:00~16:00	2020.11.05(목) ~ 11.06(금) 10:00~16:00
	LH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1층)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추후 개별공지 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核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략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략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략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0.09.03~2020.09.11)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소득상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 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2019.07.29~2020.07.28)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 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불가) * 주택공급금액 20% + 발코니 확장 계약금(1,000천원)
		② 본인(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LH 청약센터 게시 예정)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포함)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현장계약)'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응에 한함) 및 인감도장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본인(계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본인(계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④ 본인(계약자) 도장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사이버전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감정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갑을 경사로(이동식)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0.11.03~2020.11.05)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지구 북동측에 동서울전력소 및 주변 고압선로가 위치하며, 전파장애, 소음 등 환경기준을 만족함
 - 지구 서남측으로 천마산, 동측으로 금암산이 위치함
 - 지구 남동측에 캐슬렉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타구/골프장관리기계 소음, 야간라이트에 의한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압송전선로(철탑6기)가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으나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 등)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임
 -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지구 동측으로 약 1km 내외의 거리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 주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감일지구 방향 1차로 확장 계획이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소음저감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으로 도로공사 주관의 방음벽 설치계획이 있으며 일정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남서측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위례신도시북측도로(폭 약 30m) 공사 진행 중에 있음(현재 임시개통)
 - 소음저감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변 방음시설 등 설치계획이 있음
 - 지구 경계로부터 북동측 약 2.7km내에 군부대 하남비행장(헬리콥터)이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상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 감일지구는 주 운항경로 외부로서 항공기 등 소음도 극선 상 약 60dB 이하 구역에 위치함 (환경기준 주간 약 65dB 이하)
 - 지구 내 학교는 총 6개소(초등 3개소, 중등 2개소, 고교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초3, 중2는 '19.09 개교하여 운영중에 있음
 - 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열가압장, 가스공급설비(가스공급시설, 긴급차단시설, 정압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구 내 동서를 횡단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3·4단계, 남북으로 비상연결관이 기 매설되어 있으며, 3·4단계는 존치하고 비상연결관은 지구 내 감일~초이간 간선도로변으로 이설할 계획임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쪽으로 동서울 전력소, 북쪽으로 주변 고압선로 및 저류지가 위치하며, 저류지 내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소하천(벌말천)은 건천으로 평상시 유수의 흐름을 관찰하기 어려움
 - 벌말천, 저류지, 수변공원 등과 인접해있는 동에는 소음, 악취 및 벌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외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 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 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연결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는 지구계획 변경 시 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공동주택용지(B2-B3-B4BL), 동측에 공동주택용지(A6-A2BL)가 위치하며 남서측으로 주상복합용지, 서측 약 32m도로, 남측 약 20m도로에 접하여 소음 및 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 학교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동일 단지 내에 공공분양, 장기전세 및 10년 공공임대 유형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의 경우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전용주차구획 등)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그 위치, 크기 및 모양 등은 추후 관 계기관 협의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적합하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윤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공학 등 공동부분은 디자인 의도, 유관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판매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 정원 및 조경수 시설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단지 내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단지내 상가,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등의 경우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 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배치상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외부의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단지내 비상차로 및 지상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곽에 위치한 일부 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는 출입구 인근에 1개소(단지별 1개소만 설치)만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 불가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보도, 조경, 주차장 등) 및 대지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의 위치, 모양 및 디자인, 크기 등은 소방서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들은 사업승인도면의 내용에 준하여 설치됨
-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이나 동표시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색채 및 조경자문, 현장여건, 입면차별화 등에 따라 단지 내 주동 및 상가 또는 옥탑, 지붕, 축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시설입면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색채, 축벽 로고의 위치, 조경, 세부식재 계획, 옥상, 소형구조물 등이 변경,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써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높이가 다소 변경(준공도면에 반영함)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D/A 등이 저층부 세대에 근접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배출된 공기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위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용수 후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경로당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 대지면적은 시설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단지레벨 및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복합구조(FCW)로 시공됨
- 각종 주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동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지 경계부분의 경사면과 옹벽높이는 현황도로와 인접부지 레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품 보관 및 쓰레기분리수거)가 주거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냄새, 미관 저해, 소음, 해충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하여야함. 또한, 생활자원보관소의 위치 및 크기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203동 1호라인 지하층에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창고가 위치해 있어 냄새, 미관 저해, 소음, 해충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적정하게 배치할 예정임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교육, 관공 등의 식재가 불가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되며,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에 경관조명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무동력흡출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1동 4호라인(2개층), 205동 3호라인(2개층), 207동 2~3호라인(2개층), 208동 2~3호라인(2개층), 209동 2~3호라인(2개층)에 필로티가 있음
- 204동 배면에 전기실, 발전기실, D/A 및 장비반입구가 위치하여 소음 발생 가능
- 204동 배면에 아파트 전기 수전용 한전 PAD S/W가 설치되며, 단지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 중계기가 각 동 옥상 및 1층 녹지에 설치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정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임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와 거실 및 침실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인접세대에는 시설물 작동시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
- 아파트 계단실 연창의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실 및 홀 등은 개인적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이 불가함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의 위치, 모양,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동에 따라 다름
-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고,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및 펌프실 근접동(201동, 204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및 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열교환을 통해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온수로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자의 개별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207, 208, 209동은 철타고압선로가 인접해있어 미관과 조망을 해칠 수 있으며, 통신장애가 있을 수 있음
- 210동 4호 라인쪽으로 지하층에 열교환실이 있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0동 주변에 자연석쌓기가 시공돼있어 단지 내·외부 단차가 발생함
- 208동과 209동 사이 및 202동과 204동 사이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외부계단이 있음

- 지하주차장,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 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시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종 지하 PIT전선은 단열재설치 외 별도의 마감이 없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설치로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등 구조물로 인하여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 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단지 내부 시설물에 의하여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되거나,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영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동별 엘리베이터 사용은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205동 1~3호 라인은 2대, 206동 1~3호 라인은 1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임
- 각 실은 경량벽체로 공간이 구획되나 조적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장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동스위치(일괄소동,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 내장)가 설치됨
- 타입별 옥실벽 이질재부위는 크랙여부를 위해 타일나누기도가 바닥, 벽이 일치하지 않아 개인에 따라 미관이 미려하지 않게 느낄 수 있음(201동 1호라인 공용옥실/ 202동 4호라인 공용옥실/ 203동 4호라인 공용옥실/ 204동 1호라인 공용옥실/ 205동 2호라인 부부옥실, 3호라인 공용옥실/ 206동 2호라인 부부옥실, 3호라인 공용옥실/ 210동 4호라인 공용옥실)
- 주차대수는 총 837대(지하 718대, 지상 117대, 상가 2대)이며 일반형, 확장형, 경차, 장애인 주차가 혼재되어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지상 주차장은 일부 공간에만 설치되어 일부 동에서는 다소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각 동별 지하 동 출입구 인근에 배치된 주차계획(확장형 주차, 장애인 주차, 경차 주차, 전기차 주차 등)의 경우 배치계획에 따라 동별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자립형, 이동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지하주차장에 203동 주변에 2개소, 205동 주변에 2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전기차충전시간 대기시간이 장시간 길어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종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중동 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계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통행시 줄눈 설치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도장미감이 아닌 뿔칠로 시공되어 색상이 고르지 못하고 이색질 수 있으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층으로 되어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단지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일부는 설계변경 될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단지 차량 출입구 부분은 주거부분과 비주거(근린생활시설)부분이 공동으로 사용되며, 비주거 주차장은 지상에 위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동일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약 2.3m이며, 주차구획 구간은 약 2.1m임
- 지하주차장바닥은 면적이 넓어 바닥 물청소시 구배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주차장 전·출입시 트렌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회전 이동시에도 바닥마찰음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는 202동 4호라인 1층에, 경로당은 202동 3호라인 1층에 위치함
- 주민공동시설(1층 :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멀티프로그램실 등, 2층 : 생활체육시설)은 205~206동 사이에 위치함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에 한전 저압 PAD 변압기 혹은 저압 접속함이 설치되어 근접 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어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구획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출입구는 아파트 차량 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됨
- 근린생활시설 후면부는 일부 조경석쌓기가 시공되고 단차가 발생하며, 보도 또는 계단이 추가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진입도로의 접근성으로 인해 일부 점포간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본 공사시 도로와 단지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서측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 포함), 운동시설, 수경시설, 휴게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함) 및 1층 승강장,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단지 동북측(206동과 207동 사이)에 위치함
- 210동 배면, 208동~209동 배면, 201동~204동 정면에 면하여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208동 배면 및 204동, 205동 정면에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가 설치됨
- 단지(아파트, 상가 등)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PAD S/W가 각각 설치됨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아파트 204동 옥탑층에 TV시청을 위한 공청·위성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부대시설 및 공동시설 냉난방기 환기팬 가동 시 인근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무인배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임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하남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어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팜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팜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중 한곳에 환기용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위치로 부적합 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중 한곳에 환기용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됨
- 발코니 벽면 상·하부 각 1개소(대피공간은 하부 1개소)에 ABS원형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냉기가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2, 3 미닫이문 개폐시 문과 슬라이퍼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충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에만 매립 설치(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되며, 침실2, 3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발코니에 있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각 층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침실1 냉매 배관 박스 옆 경량벽체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고려한 보강판이 설치되어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급배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됨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예정임
- 세대 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급회 공급하는 74A, 84B, 84B-1 타입에는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1~3층에는 대피공간 대신 발코니가 설치됨
- 전체타입 3층부터 10층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3층은 발코니에 설치됨)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화강석 및 석재뿔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고, 일부분에 한하여 외부수성페인트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거실 아트월의 마감재는 포세린타일이며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세대경계벽 제외)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앵커못 등을 사용한 견고한 고정방법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보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함
- 주방가구, 화장대,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바닥마감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 경량벽체에 벽걸이형 TV 설치를 고려한 보강판이 설치되어 있음
- 각 동별로 진입층과 진입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 및 기준은 상이함
- 비데는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공용욕실에는 설치되지 않음
- 모든 타입 세대 주방에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은 설치되지 않음
- 주방 환기는 공용배기시스템으로 욕상층에 공용 환기팬이 설치되며, 세대에 설치되는 렌지후드에는 별도의 환기팬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해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며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하부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릿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환기용 유닛트는 겨울철 결로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가동을 요함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석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아파트 1층 홀 및 부대시설 통로 바닥마감 석재(화강석)는 미끄럼저항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광택면이 가공이 적용되며, 개인에 따라 광택 등 외관이 미려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음
- 무상제공 ICT서비스 : 세대 내 KT AI 아파트 서비스(서비스이용료 무료)
 - KT "GIGA Genie 홈 IoT"앱을 통한 AI 아파트 서비스가 제공됨
 - 스마트 홈 앱을 통하여 아파트 세대 내 조명, 난방 등 기기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함
 - 타사 AI 스피커 이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KT AI 아파트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신청(가입)이 필요함
 - AI 스피커와 스마트폰 앱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 AI 스피커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환경 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임
 - 세대 내 인터넷 및 wifi는 통신사와 무관하며, 입주자 부담사항임
 - AI 스피커 서비스 중 일부는 KT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함(KT 인터넷 전화, TV, 지니뮤직 등)
 - IoT 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기기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IoT 가전 및 HOME to Car 서비스는 KT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됨
 - 단지 사정에 의해 홈네트워크 플랫폼의 유지보수가 제한되거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 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KT의 시스템과 연동이 불가능할 경우 단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될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에는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계약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인자차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심선(또는 벽체외부끝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 사이버 견본주택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시설계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와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학교명	개교일	해당 교육청
초	초1	2021.3월 예정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2	미정	
	초3	2019.9월	
중	중1	미정	
	중2	2019.9월	
고	고	2021.3월 예정	

※ 하남갑일지구내 학교는 총 6개소(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추후 지구계획 변경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환경 관련 등급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율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생활환경 관련 등급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 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감지 및 경보설비	★
화재·소방 관련 등급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 건본주택에 사용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본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 분		타입별 적용 여부	
		74A	84B / 84B-1
현 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바 닥	폴리싱타일	폴리싱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엔지니어 스톤급)	인조대리석(엔지니어 스톤급)
	신발장	PET도장	PET도장
거실/ 주방	벽지/천정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아트월(거실)	포세린타일	포세린타일
	바 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주방벽	도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주방 가구	PET 도장 인조대리석(엔지니어 스톤급)	PET 도장 인조대리석(엔지니어 스톤급)
주침실 (침실1)	바 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지/천정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침실 문틀/문짝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설치	설치
	화장대	인조대리석(엔지니어 스톤급)	인조대리석(엔지니어 스톤급)
침 실 (침실2, 3)	침실문틀/문짝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바 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지 / 천정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욕 실	벽	도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바 닥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천 정	ABS판넬	ABS판넬
발코니	바 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창 호	합성수지창호	합성수지창호
주방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공용배기방식)	침니형(공용배기방식)
	가스쿡탑	3구형(그릴미부착)	3구형(그릴미부착)
	음식물탈수기	설치	설치
	생크용절수기	설치	설치
욕실설비	양변기	원피스형	원피스형
	세면기	도기제	도기제
	욕실수납장	슬라이딩형	슬라이딩형
	욕조(공용욕실)	아크릴급	아크릴급
	욕조수전(공용욕실)	온도조절(안마헤드)	온도조절(안마헤드)
	샤워수전(부부욕실)	레인형 헤드, 수납일체형	레인형 헤드, 수납일체형
	비데(부부욕실)	설치	설치
	기타	스마트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욕실코너선반(공용욕실)	스마트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욕실코너선반(공용욕실)
	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세대환기시스템		설치	설치
조명설비	식탁등	LED	LED
	각실 조명기구	LED	LED
배선기구	현관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설치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설치	설치
정보통신설비	비상콜(부부욕실)	설치	설치
	무선AP	설치	설치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70,956,765
			기간이자	2,581,179
			필요적 경비	74,346
			그 밖의 비용	903,977
			계	74,516,267
건 축 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723,046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4,396
			석축공사	72,335
			우·오수공사	212,588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5,100
			도로포장공사	180,209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6,472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2,005,036
			부대시설공사	3,498
			계	3,232,680
		건축	공동가설공사	727,038
			가시설물공사	1,129,960
			지정 및 기초공사	1,659,427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6,193,948
			용접공사	-
			조적공사	718,024
			미장공사	811,271
			단열공사	1,027,934
			방수·방습공사	812,297
			목공사	1,787,497
			가구공사	242,058
			금속공사	221,106
			지붕 및 환통공사	148,194
			창호공사	972,888
			유리공사	492,419
			타일공사	477,222
			돌공사	811,987
			도장공사	627,872
			도배공사	297,736
			수장공사	741,431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192,324
			계	20,092,633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504,596
			급탕설비공사	375,005
			오배수설비공사	1,640,092
			위생기구설비공사	888,312
			난방설비공사	1,107,307
			가스설비공사	205,754
			자동제어설비공사	87,245
			특수설비공사	197,882
			공조설비공사	68,810
			계	5,075,002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4,173,816
			정보통신공사	1,190,162
			소방설비공사	1,945,984
			승강기공사	170,975
			계	7,480,937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494,707
			이윤	2,533,791
			계	4,028,498
	간접비	간접비	설계비	794,573
			감리비	309,001
			일반분양시설 경비	42,456
			분담금 및 부담금	759,902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1,493,076
			계	3,399,008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121,015,66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하나감정평가법인
75,639,798,000원	75,247,068,000원	76,032,528,000원

9.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 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계	기간 이자	흙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계	건축구조 형식 가산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사업승인 부가조건 (입면특화)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기계 환기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금액	3,794,423	2,751,532	963,638	79,253	3,401,213	1,096,966	386,332	411,561	208,162	511,018	197,477	335,268	243,655	10,773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B1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금강주택(주) (211-81-81882) 한일개발(주) (129-81-45758) 세원건설(주) (105-81-30768)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11. LH하남사업본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오시는길 : 일반 112번, 112-1번, 112-5번, 13-2번, 30-3번, 23번, 23번, 직행 9301번, 간선 341번
분양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문의처 : 031)790-7803, 9361
B1블록 홈페이지 주소 : www.sweetcityb1-gb.co.kr
모바일 웹사이트 주소 : m.sweetcityb1-gb.co.kr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운영기간 : 2020.07.28(화) ~ 공급종료 시 까지

[코로나 19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하남감일 B1블록은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sweetcityb1-gb.co.kr>)을 운영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홍보관 방문시 아래 방역을 거쳐 이상이 없는 분만 내방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시에는 마스크착용, 체온체크 등 예방절차 후 입장이 가능하며, 마스크 미착용 및 체온체크 시 37.3도가 넘을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에 예정입니다.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오시는길 : 일반 112번, 112-1번, 112-5번, 13-2번, 30-3번, 23번, 23번, 직행 9301번, 간선 341번

분양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문의처 : 031)790-7803, 9361

B1블록 홈페이지 주소 : www.sweetcityb1-gb.co.kr

모바일 웹사이트 주소 : m.sweetcityb1-gb.co.kr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운영기간 : 2020.07.28(화) ~ 공급종료 시 까지

LH 하 남 사 업 본 부